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0 - 45 - 200호(사건번호201001조사003)

안 건 명 (주)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에스비에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0번지
대표이사 우원길

의결연월일 2010. 7. 23.

주 문

1.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1,97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4.23일(금) 피심인(이하 “SBS”)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판매(SBS) 또는 구매(KBS·MBC)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010.4.26일(월)까지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30일(금)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5.3일(월)까지 방통위에 보고할 것
3.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14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010.8.31일(화)까지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동 명령에 따라 3사는 2010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4.26일(월)부터 4.30일(금)까지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3일(월) 방통위에 제출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3사간 대면 협상 횟수

SBS와 KBS는 3차례(4.26일, 29일, 30일), SBS와 MBC는 2차례(4.26일, 29일) 대면 협상을 실시하였다.

< 참고 : SBS - KBS 대면 협상 경과 >

구분	협상 개요 및 내용
4.26일(월) 1차 협상	○ 협상 개요 - 시간 : 17:30~19:20 - 장소 :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 참석자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협상 내용 - SBS는 일반적 판매조건(지상파 중계방송권에 한정, 순차편성에 따른 공동중계,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국가 경기와 개막전·결승전은 SBS 단독중계 등), 가격산정시 포함요소(수수료·환율등 제반비용, FIFA Other Events 실비용, 공동중계에 따른 SBS 브랜드가치의 저하분) 등을 제시

	- KBS는 구매 희망가격(3사 방송시 239억6천5백만원·2사 방송시 359억4천7백만원), 방송권 범위 등을 제시
4.29일(목) 2차 협상	○ 협상 개요 - 시간 : 14:00~15:0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참석자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협상 내용 - SBS는 한국·북한·일본·호주 경기, 개막·결승전 14경기 독점중계 주장 - KBS는 14경기 SBS 단독중계는 수용불가(일부경기는 협의가능)하고, 1TV에 의한 순차방송은 수용하면서 중계권료(3사중계시 96억원·2사중계시 144억원) 제시
4.30일(금) 3차 협상	○ 협상 개요 - 시간 : 18:30~19:3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참석자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협상 내용 - SBS는 KBS에 일본·호주 경기 포함 56경기 순차편성(한국·북한, 개막전·결승전 등 8경기는 제외) 및 중계권료 316억원 제시 - KBS는 일본·호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의 순차방송(한국·북한 1경기씩 보장) 및 중계권료 수정안(3사 방송시 96억원·2사 방송시 144억원) 제시

< 참고 : SBS - MBC 대면 협상 경과 >

구분	협상 경과 및 내용
4.26일(월) 1차 협상	○ 협상 개요 - 시간 : 19:30~21:00 - 장소 :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 참석자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스포츠제작부장, 송민근 스포츠제작부 차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협상 내용 - SBS는 일반적 판매조건(지상파 중계방송권에 한정, 순차편성에 따른 공동중계,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국가 경기와 개막전·결승전은 SBS 단독중계 등), 가격산정시 포함요소(수수료·환율등 제반비용, FIFA Other Events 실비용, 공동중계에 따른 SBS 브랜드가치의 저하분) 등을 제시 - MBC는 구매 희망가격(239억 5천6백만원), 방송권 범위 등을 제시

4.29일(목) 2차 협상	○ 협상 개요 - 시간 : 16:00~17:3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호텔 - 참석자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스포츠제작부장, 송민근 스포츠제작부 차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협상 내용 - SBS는 AFC소속 국가경기·개막전·결승전의 단독중계, 나머지 경기의 순차중계 입장을 고수 - MBC는 AFC소속 4개국 12경기 중 4경기(각 국별 1경기)의 MBC와의 공동중계 제안
-------------------	--

특히, KBS는 SBS에게 4.28일(수) 대면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SBS가 이를 거부하였고,

시정명령에 따른 협상 종료일인 4.30일(금) 이후에도 5.1일(토)과 5.2일(일)에는 유선, 5.3일(월)에는 공문으로 대면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SBS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의 제시

KBS와 MBC는 각각 3차례(4.26일, 29일, 30일), SBS는 2차례(4.27일, 30일) 상대방에게 희망가격을 제시하였는데,

시정명령에 의하면 3사 모두 희망가격을 4.26일(월)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나, KBS·MBC는 이를 이행한 반면,

SBS는 4.26일(월) KBS·MBC와의 1차 협상에서 일반적 판매조건 및 가격산정시 포함요소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판매조건과 가격은 다음 날인 4.27일(19시30분경)에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협상 결과

배분대상 경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는데,

KBS와 MBC는 SBS에게 일본·호주 외에 한국·북한 경기의 배분도 요청하였고,

SBS는 일본·호주 경기의 배분은 양보하였으나,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 경기(총 8경기)의 KBS·MBC에 대한 배분을 거절하였다.

특히, MBC는 4.30일(금) 3차 제안에서 한국·북한 경기의 생중계 대신 재방송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SBS는 이를 거절하였다.

< 참고 : 3사별 “배분대상 경기” 및 “희망가격” 관련 협상 경과 >

일자/생점	SBS	KBS	MBC
4.26일(월)		< 1차 제안 > (17:30)	< 1차 제안 > (17:30)
대상경기	50경기(3사 순차 편성) ※ 전체 64경기에서 한국,북한,일본,호주 12경기 및 개막·결승 2경기(총 14경기)를 제외	64경기	64경기 ※ 한국전은 3사 합동, 기타 경기는 1경기 2사 중계
희망가격	-	(3사공동) 239억6천5백만 (2사공동) 359억4천7백만	239억5천6백만
4.27일(화)	< 1차 제안 > (19:30경)		
대상경기	상동	-	-
희망가격	(KBS) 318억(KBS1만 중계) (MBC) 370억	-	-
4.29일(목)		< 2차 제안 > (17:15)	< 2차 제안 > (11:30)
대상경기	-	64경기(3사 순차 편성) ※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	62경기(2사 1경기 중계) ※ 개막·결승 2경기 제외 ※ 한국,북한,일본,호주 경기 중 각 국별 1경기만 배분할 때 제안금액을 SBS에 요청
희망가격	-	(3사공동) 96억(KBS1만) (2사공동) 144억(KBS1만)	245억
4.30일(금)	< 2차 제안 > (18:30)	< 3차 제안 > (10:00)	< 3차 제안 > (18:20)
대상경기	56경기(3사 순차 편성) ※ 한국,북한 6경기 및 개막·결승 2경기(총 8경기) 제외	58경기(3사 순차 편성) ※ 일본,호주 6경기 제외	(1안) 64경기(공동 중계) (2안) 20경기(단독 중계) ※ 한국,북한,일본 각 1개 MBC 단독/나머지 한국,북한,일본 및 호주,개막·결승은 SBS 단독/잔여 50경기 중 17개 MBC 단독

			(3안) 3경기 공동/17경기 단독 ※ 한국, 북한, 일본 각 1개 SBS와 공동/기타 2안과 동일 (4안) 17경기(단독 중계) ※ 한국, 북한, 일본, 호주, 개막·결승 SBS 단독/나머지 50경기 중 17개 MBC 단독 ◇ 2·3·4안은 64경기 재방 및 하이라이트 포함
희망가액	(KBS) 316억(KBS1만) (MBC) 408억	(3사공동) 96억원(KBS1만) (2사공동) 144억원(KBS1만)	(1안) 270억/(2안) 200억 (3안) 150억/(4안) 60억

라. SBS - KBS간 세부 협상경과

일자	세부 내용
2010. 4.26 (회의참석시 KBS는 공문전달)	◇ 1차 협상 - 시간 : 17:30~19:20 - 장소 :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회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KBS는 SBS에 구체적 금액 제시(공문) - 1안 : 3사 방송시 239억6천5백만원, 2안 : 2사 방송시 359억4천7백만원 · 방송권료, SBS Int 수수료, 원천세, 선급금 이자, Other Events 제작비 분담 포함 - 방송권의 범위는 SBS와 동등한 권리(지상파+부가권리) - 지상파 : 뉴미디어 관련 방송권료 = 90% : 10% - FIFA Other Events 방송권료 600만\$ 제외 - 선급금 지급이자, 보험료, Other Events 제작비, 환율 변동분등은 SBS 입증 자료에 의해 상호 합의시 조정 가능 ○ SBS는 판매조건과 가격산정시 포함요소 제시 - (판매조건) 재판매는 FIFA의 사전승인을 전제, 지상파 중계방송권에 한정, 순차 편성에 따른 공동중계, AFC소속국가(한국·북한·일본·호주)경기와 개막전·결승전은 SBS가 중계, 나머지 경기는 순차편성(협의 필요) - (가격산정시 포함요소) 수수료·환율·선지급이자·송금비용·세금·보증보험료 등 제반비용, FIFA Other Events 실비용, 공동중계에 따른 SBS 브랜드가치의 저하분 - (기타) 비방보도 해결방안, 협상내용 보안유지
2010. 4.27 (15:30)	○ KBS는 SBS에 협상조건에 대한 답변 요청 - SBS가 산정한 남아공월드컵 총 방송권료 - SBS가 독점중계를 주장한 AFC소속국가(한국·북한·일본·호주)경기와 개막전·결승전의 총 방송권료와 경기별 방송권료 - 남아공월드컵 총 방송권료 중 케이블방송권료 비중

2010. 4.27 (19:27)	○ SBS는 KBS에 판매조건 및 가격 제시 - (조건) KBS1에 방영조건,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 4개국 경기, 개막·결승전은 제외(AFC소속 국가가 16강 이상 진출시 경기수 조정)한 50경기 기준, SBS·KBS·MBC 3사 순차편성(대상경기는 별도 협의) - (가격) 총 318억원 제시 · 남아공월드컵 방송권료의 KBS에 대한 현재원가 배분액 : 283억원=1,086억원×50/64÷3사, SBS에 대한 비방보도 위자료 35억원 - (기타) 상기 내용에 대한 합의는 FIFA의 사전승인 필요, FIFA 승인 후 1주일 이내 본 계약체결과 대금납입 완료
2010. 4.28 (11:50)	○ KBS는 SBS의 판매조건 및 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 핵심경기(한국·북한·일본·호주 4개국 전경기와 개막전·결승전)를 제외시키고, 방송권 범위도 케이블을 제외한 지상파 권리로 한정, KBS의 편성채널까지 제한한 상태에서 과도한 방송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 - 전경기에 대한 방송권료의 합리적인 분담과 합동·순차방송 합의를 위한 협상 자세 변화 요청 - 이를 계기로 코리아폴 체제를 복원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 과당경쟁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 기대
2010. 4.29	◇ 2차 협상 - 시간 : 14:00~15:0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SBS는 한국·북한·일본·호주 경기, 개막·결승전 14경기 중계 양보 불가 ○ KBS는 14경기 SBS 단독중계는 수용불가(일부경기 양보는 협의가능) - 1TV, 순차방송 수용 - 1TV 중계시 1안: 3사중계시 96억원, 2안 : 2사중계시 144억원 제시
2010. 4.29 (15:20)	○ SBS는 KBS의 4.28 공문에 대한 답신 - SBS가 AFC소속 국가의 경기 단독중계를 제안한 이유 : 주목도가 높은 경기는 반드시 품질 높은 현장중계를 해야 함,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익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 방송법령의 국민관심행사 규정취지에도 부합, AFC패키지에서 SBS를 배제한 점 등을 감안 - 코리아폴 체제를 복원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 과당경쟁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에 대한 주장에 대한 답변 : 현재 SBS와 지역민방의 네트워크만으로도 법으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합동방송을 요청하는 것은 중복편성을 통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과 시청권을 제한하자는 주장 - 코리아폴 체제를 복원하더라도 2005년 AFC패키지를 IB스포츠에 빼앗긴 사례처럼 중계방송권의 확보는 어렵다는 점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남 - KBS가 공동중계할 의사가 있으면 SBS의 제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여 정확한 수용여부를 조속히 밝혀줄 것

2010. 4.29 (17:15)	○ KBS는 2차 제안(금액 수정) 제시 - 1안 : 3사 방송시 96억원(240억원×40%), 2안 : 2사 방송시 144억원(360억원×40%) - KBS1TV 방송기준 금액(2TV는 프로그램에만 사용), 순차방송 수용 - 방송권의 범위 :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DMB·라디오 - SBS가 독점중계하고자 하는 14경기중 일부경기 양보 가능
2010. 4.30 (10:00)	○ KBS는 3차 제안(일본·호주 경기 독점중계는 수용) 제시 - 1안 : 3사 방송시 96억원(240억원×40%), 2안 : 2사 방송시 144억원(360억원×40%) - KBS1TV 방송기준 금액(2TV는 프로그램에만 사용) - 방송권의 범위 : 지상파, 케이블, 지상파 DMB·라디오 - SBS가 독점중계하고자 하는 14경기중 일본·호주 경기 독점중계는 수용, 나머지 경기는 순차방송
2010. 4.30 (회의참석시 SBS는 공문전달)	◇ 3차 협상 - 시간 : 18:30~19:3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 참석자 · KBS : 박영문 스포츠국장, 정진화 스포츠사업팀장, 김춘길 스포츠중계제작팀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SBS는 KBS에 수정안 제시(공문) - 일본·호주 경기 포함 56경기 순차편성(한국·북한, 개막전·결승전 등 8경기 제외) - 비방보도 관련 위자료는 삭감(단,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조건) - 수정 제시 방송권료 : 총 316억원 ○ KBS 발언내용 - 1안 : 3사 방송시 96억원(240억원×40%), 2안 : 2사 방송시 144억원(360억원×40%) - KBS1TV 방송기준 금액(2TV는 프로그램에만 사용) - SBS가 독점중계하고자 하는 14경기중 일본·호주 경기 독점중계는 수용, 나머지 경기는 순차방송 - 한국·북한 1경기씩 보장 요청 ○ SBS 발언 내용 - 일본, 호주경기 양보했으므로 KBS의 수용 필요 - 런던올림픽 WBM 신청기한이 다가오므로 올림픽 합동방송에 신경써야 할 때임
2010. 5. 3 (12:00)	○ KBS는 4차 제안(추가 협상조건) 제시 - 방송권료 추가 조정 가능 - KBS1TV 중계방송, 2TV 하이라이트 방송 및 경기 화면 프로그램 사용 - 경기 배분 추가 조정 가능 - AFC패키지 배제에 대한 SBS손실 협상 가능 - 신속한 협상을 위해 금일(5.3)중 추가 면담 협상 요청

※ 음영부분(일자)은 수발신 공문의 내용이며, 비음영 부분은 회의 내용임

< 유선통화 내역(KBS) >

- KBS 박영문 스포츠국장과 SBS 허인구 스포츠국장간의 통화
 - 4.23, 4.25, 4.28, 4.30, 5.3 : 협상일정 상의
 - 5.1(2회), 5.2 : KBS도 많이 양보했으므로 SBS의 재고 요청

< AD카드 신청 관련 >

- 4.22, SBS는 남아공 월드컵 뉴스 관련사항 통보
 - 뉴스방송권 재판매는 FIFA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판매계약을 원함
 - 뉴스취재 협조를 위해 현지 취재용 **AD카드 8장**과 FIFA가이드라인 및 국내 방송법에 따른 **뉴스용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 4.28, KBS는 AD카드 17장 신청
 - 북한관련 취재 인력, 가이드, 제작 보조 인력을 반영한 규모임
 - 취재기자(5명), 촬영기자(5명), 가이드(4명), 엔지니어(1명), 뉴스편집(1명), 국제코디·행정(1명)
- 4.30, SBS는 AD카드 신청 관련 답신
 - 8장의 AD카드는 FIFA에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8장이 최대수량임**
- 4.30, KBS는 AD카드 8장 신청

마. SBS - MBC간 세부 협상경과

일자	세부 내용
2010. 4.26 (회의참석시 MBC는 공문전달)	◇ 1차 협상 - 시간 : 19:30~21:00 - 장소 :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호텔 - 참석자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스포츠제작부장, 송민근 스포츠제작부 차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신지식 스포츠제작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MBC는 SBS에 구체적 금액 제시(공문) - 총 239억 5천6백만원 · 방송권료, SBS Int 수수료, 원천세, 선금금 이자, Other Events 제작비 분담 포함 - 구매 희망경기 : 전경기 - 방송권의 범위는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지상파DMB - 중계방식 : 3사 합동중계(한국경기 3사 합동중계, 기타경기 1경기 2사) - 방송권료는 실제 지불 환율, 의무중계비용, 선금분 이자율에 대한 SBS 증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SBS는 판매조건과 가격산정시 포함요소 제시 - (판매조건) 재판매는 FIFA의 사전승인을 전제, 지상파 중계방송권에 한정, 순차 편성에 따른 공동중계, AFC소속국가(한국·북한·일본·호주)경기과 개막전·결승전은 SBS가 중계, 나머지 경기는 순차편성(협의 필요) - (가격산정시 포함요소) 수수료·환율·선지급이자·송금비용·세금·보증보험료 등 제반비용, FIFA Other Events 실비용, 공동중계에 따른 SBS 브랜드가치의 저하분 - (기타) 비방보도 해결방안, 협상내용 보안유지 ○ MBC 발언 내용 - 시정명령에 의해 오늘 가격제시가 있어야 했는데 또 다시 금액 제시가 없어 유감 - SBS가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경기별 또는 전경기에 대한 방송권료 금액 제시 필요 - 기본조건에 대한 협상가능 여부와 현장ID·현장 중계석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SBS 발언 내용 - 경기분배방식 사전합의 필요, AFC패키지 소속국가 경기 중계배제 이유 설명 - 기본 조건을 기준으로 MBC가 이 안을 전부 수용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경기배분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 제시가 어려움 - 광고 재원을 기반으로 한 방송권료 산출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한국·일본 등 주요경기를 SBS만 중계하는 것은 AFC배제, 남아공월드컵 가치 상승, 공동중계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공동중계에 따른 SBS 브랜드가치의 저하분도 상당부분 줄어든 것임 - 지상파 방송권료 책정은 뉴미디어 권리 10%를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함
2010. 4.27 (e-mail, 15:15)	○ MBC는 SBS에 협상 관련 문의 - SBS가 제시한 기본조건과 가격산정시 포함요소를 반영한 전체 방송권료 금액 - SBS가 단독중계를 주장하는 14경기가 전체 방송권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 - 가격산정시 포함요소에 대해 SBS가 산정한 금액 - 뉴미디어권리와 케이블권리의 총방송권료에 대한 비율 - 나머지 경기에 대해 SBS가 MBC에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경기 - AFC소속 국가 경기에 대해 일부의 경기라도 MBC가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2010. 4.27 (19:29)	○ SBS는 MBC에 판매조건 및 가격 제시 - (조건)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 4개국 경기,개막·결승전은 제외 (AFC소속 국가가 16강 이상 진출시 경기수 조정)한 50경기 기준, SBS·KBS·MBC 3사 순차편성(대상경기는 별도 협의 : 17경기) - (가격) 총 370억원 제시 · MBC 배분경기 광고재원 : 233억원=699억원÷3사, MBC 배분경기 재방·하이라이트 재원 : 42억원=160억원×50/64÷3사, SBS 단독중계 평판효과 기회비용 상실 : 80억원=309억원×50/64÷3사, SBS에 대한 비방보도 위자료 15억원 - (기타) 상기 내용에 대한 합의는 FIFA의 사전승인 필요, FIFA 승인 후 1주일 이내 본 계약체결과 대금납입 완료
2010. 4.29 (11:30)	○ MBC는 2차 제안 제시 - 1안 : 총 245억원(당초 금액보다 5억원 증액) 제시 ※ 개막·결승전을 제외한 62경기 기준, 지상파 2사 1경기 중계 - 2안 : 아래 조건을 반영한 SBS의 수정금액 제안 요청 ※ 한국·북한·일본·호주 경기중 SBS가 각 국별 2경기(총 8경기)를 단독중계, MBC에 각 국별 1경기(총 4경기)를 배분 - MBC는 SBS의 판매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 4개국 경기,개막·결승전은 제외하는 SBS의 재판매조건은 방송법 보편적 시청권 조항의 취지, 광고판매규모, 시청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관심경기를 제외한 50경기만을 MBC가 구매할 경우 패키지 판매가 불가능해 광고판매율이 재원 대비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SBS 광고재원 산출의 가격과 광고판매율이 시장상황보다 높게 산정됨) · SBS의 광고재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방송권의 독점보유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비합리적이며, 구입가격에 SBS 고려요소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

2010. 4.29 (회의참석시 SBS는 공문전달)	◇ 2차 협상 - 시간 : 16:00~17:30 - 장소 : 여의도 렉싱턴호텔 - 참석자 · MBC : 허연희 편성제작국 부국장, 김종현 스포츠제작부장, 송민근 스포츠제작부 차장 · SBS : 허인구 스포츠국장, 성희용 정책팀장, 엄재용 정책팀차장 ○ SBS는 MBC의 2차 제안에 대한 SBS 의견 회신(공문) - MBC의 월드컵광고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는 방송3사가 공동·중복중계했던 과거의 관행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BS가 제시한 금액은 순차편성을 통해 각 경기를 1사가 단독중계로 산정한 것임 - MBC의 2차 제안중 1안은 순차편성을 권고하는 방송법령의 취지에 어긋남 - MBC의 2차 제안중 2안에 대해서는 AFC소속 4개국 경기와 개막·결승전은 SBS가 중계하겠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고 KBS와도 협상중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용곤란 - SBS가 AFC소속 국가의 경기 단독중계를 제안한 이유 : 주목도가 높은 경기는 반드시 품질 높은 현장중계를 해야 함,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익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 방송법령의 국민관심행사 규정취지에도 부합, AFC패키지에서 SBS를 배제한 점 등을 감안 - 위 내용들을 고려하여 SBS가 4.27 제안한 내용의 수용여부 표명 요청 ○ MBC 발언 내용 - AFC소속 4개국 총12경기 중 4경기라도 MBC와 공동중계가 불가능한지 문의 ○ SBS 발언 내용 - SBS가 제안한 14경기 SBS 단독중계에 대한 양보는 어려움
2010. 4.30 (18:20)	○ MBC는 3차 제안 제시 - 1안 : 총 270억원(당초 금액보다 30억원 증액) · 64경기 전 경기 기준, 방송3사 순차방송 또는 2사 1경기 중계 - 2안 : 총 200억원(20경기 MBC 단독중계) · 한국·북한·일본 경기 중 SBS가 각 국별 2경기 및 호주 3경기, 개막·결승전(총 11경기)을 단독중계, MBC에 한국·북한·일본 각 국별 1경기(총 3경기)를 배분 ·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 4개국 경기, 개막·결승전을 제외한 50경기 중 17경기 MBC에 배분(2사 1경기 중계도 가능) · 64경기 재방 및 하이라이트 - 3안 : 총 150억원(3경기 SBS·MBC 공동중계, 17경기 MBC 단독중계) · 한국·북한·일본 각 국별 1경기(총 3경기)를 SBS와 MBC가 공동중계 · 나머지 조건은 2안과 동일 - 4안 : 총 60억원(17경기 MBC 단독중계) · 한국·북한·일본·호주 경기, 개막·결승전(총 14경기) SBS 단독중계 · 한국·북한·일본·호주 등 AFC 소속 4개국 경기, 개막·결승전은 제외한 50경기 중 17경기 MBC에 배분(2사 1경기 중계도 가능) · 64경기 재방 및 하이라이트 - 한국·북한·일본·호주의 조별 예선, 개막·결승전 총14경기를 제외한 50경기는 2사 1경기 중계방식도 가능

2010. 4.30 (18:30)	○ SBS는 MBC에 수정안 제시 - 일본·호주 경기 포함 56경기 순차편성(한국·북한, 개막전·결승전 등 8경기 제외) - 비방보도 관련 위자료는 삭감(단,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조건) - 수정 제시 방송권료 : 총 408억원
2010. 4.30 (22:16)	○ SBS는 MBC 3차 제안에 대한 답신 - SBS는 한국·북한경기와 개막·결승전 최소 8경기는 순차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MBC의 3차 제안중 이들 경기 배분이 포함된 1,2,3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특히 3안에서 제안한 일부 공동중계 방안은 순차편성을 권고하고 있는 방송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SBS는 1사 1경기 순차편성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함) - 2,3,4안은 모두 64개 전경기에 대한 재방과 하이라이트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SBS는 배분대상이 되는 경기에 대한 재방과 하이라이트권만 분배하기로 제안하였음 - 다만, MBC의 4안에서 재방과 하이라이트 분배조건을 SBS의 4.27 공문에서 밝힌대로 수용한다면 가격조건은 재협의할 용의가 있음

※ 음영부분(일자)은 수발신 공문의 내용이며, 비음영 부분은 회의 내용임

< AD카드 신청 관련 >

- 4.22, SBS는 남아공 월드컵 뉴스 관련사항 통보
 - 뉴스방송권 재판매는 FIFA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판매계약을 원함
 - 뉴스취재 협조를 위해 현지 취재용 AD카드 8장과 FIFA가이드라인 및 국내 방송법에 따른 뉴스용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 4.28, MBC는 AD카드 8장 등 신청

3. 시정명령 이행 여부 검토

가. 관련 조항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중계권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제1항 및 별표 2의2는 금지행위의 중지 위반시 100분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반시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감안하여 상한 내에서 위 과징금의 50% 범위까지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조항 >

※ **방송법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4 (시정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중지
3.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1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3호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3

나. 정당한 사유 없는 시정명령 미이행 여부

(1) 판단 기준

본 건에서는 SBS의 (i) “금지행위의 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4.23일자 시정명령 제1항*의 위반 여부 및 (ii)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에 해당하는 제2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희망가격을 2010.4.26일(월)까지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30일(금)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5.3일(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를 위해 SBS가 4.23일자 시정명령에 열거된 (i)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 판매 희망가격을 4.26일에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 (ii) 4.30일까지 성실한 협상을 추진하여, (iii) 5.3일까지 동 기간의 협상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개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4.26일 이후 진행된 협상 역시 2006년 이후 진행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i) 방송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방송법 제76조제1항 및 제3항), (ii)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동법 제76조의3제1항) 등이 지켜져야 하는 바,

< 관련 조항 >

※ **방송법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 ①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 중계 방송권자등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 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 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4.23일자 시정명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실한 협상 여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SBS가 협상 과정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 내용, 협상 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의 협상 경과 등

(2) 시정명령상 개별 의무의 이행 여부 : 미이행

4.23일자 시정명령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 3사는 희망가격을 4.26일 (월)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나,

KBS와 MBC는 이를 이행한 반면 SBS는 다음 날인 4.27일, 그것도 상당히 늦은 시간인 19시30분경에야 이를 제시하였다.

시정명령시 짧은 협상기간 및 공평한 협상 진행을 고려하여 특정일에 3사가 희망가격을 동시 제시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협상기간이 하루 이상 단축 되는 등 공평하고 효율적인 협상 진행의 전제조건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성실한 협상 의무의 준수 여부 : 미이행

< ① 중계권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됨 >

(i) 4.28일(수) KBS가 대면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 (ii) 협상 종료일인 4.30일(금) 늦은 시간(18시30분경)에 이르러서야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여 KBS와 MBC가 이를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 점,

(iii) 비록 시정명령에서 명시한 협상기간은 지났으나 KBS가 5.1일(토) 및 5.2일(일)에는 유선, 5.3일(월)에는 공문으로 방송권료 및 경기배분에 대한 추가 조정 등이 가능하므로 대면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

(iv) 협상종료 이전인 4.30일(금) 광고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독 중계 의사를 시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4.30일(금) 12~15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광고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1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SBS 광고팀에서 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광고효과를 설명하고, “3사 합계 시청률 가능”, “2010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시 예상 시청률”, “단독중계시 광고 시청률 최고 45% 이상 가능” 등 단독중계를 시사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

SBS는 시정명령 이전의 판매 거부 또는 지연 행위에서 큰 변함없이 시정명령 이후에도 성실한 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

< ② 협상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음 >

4.23일자 시정명령에서 성실한 협상 의무의 내용으로서 “중계권자 및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 일반 국민이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도입배경·목적 및 취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법이 지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중계권자와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SBS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 28페이지)

그러나, SBS는 한국·북한 경기, 개막·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였는 바,

(i) 한국경기가 중계권 분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올림픽과 달리 단일 종목으로 이루어진 월드컵의 속성상 국민관심 행사로서의 특성이 상당 부분 퇴색된다는 점,

※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아일랜드는 자국팀·개막전·준결승전·결승전, 덴마크는 자국팀·준결승전·결승전만을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으로 지정

※ 시청률면에서도 한국 對 그리스전(한국시간 20:30)은 47.5%(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기준), 한국 對 아르헨티나전(20:30)은 47.8%, 한국 對 나이지리아전(3:30)은 39.5%, 한국 對 우루과이전(23:00)은 44.3%로 매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반면, 8강전인 브라질 對 네덜란드전(23:00)은 21.0%, 4강전인 독일 對 스페인전(3:30)은 5.9%, 결승전인 스페인 對 네덜란드전(3:30)은 11.2% 등 타국가간 경기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함

(ii) 중계권 보유자인 SBS의 기득권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권의 분배까지 거부한 점, (iii) 협상 과정에서 자사의 중계권 가치 평가시 전제 조건(한국전 3사 공동중계)과는 모순되는 판매 조건(가치 평가는 변함없이 한국전 배분은 제외)을 제시하는 등 방송법 제7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조건이 아닌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가격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 KBS에 협상가격을 제시하면서 56경기의 순차편성 및 KBS1 방영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당초 전체 64경기 순차편성 및 한국전의 3사 공동중계를 전제로 평가된 중계권 가치 (1,086억원)에 근거한 가격을 제시하고, 중계권 가치 평가시 KBS, MBC에 중계권을 배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음

SBS는 중계방송권자로서 방송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2010년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 충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협상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이상의 사유를 고려할 때 SBS는 정당한 사유 없이 4.23일자 시정명령인 “금지행위의 중지” 및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 의견

< ① 하루 늦은 가격제시 관련 >

SBS는 가격 제시를 하루 늦게 했다는 사유만으로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협상 타결의 핵심요소는 판매할 경기조건으로 이를 먼저 협의하고 그 조건에 맞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협상타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이며, KBS와 MBC도 협상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격”과 배분 대상경기, 중계방식 등 “조건”은 달리 논할 필요도 없이 상호결합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에서 조건 제시를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희망가격의 제시”라는 시정명령에는 “희망조건의 제시” 역시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KBS와 MBC 역시 4.26일 구매 희망가격 뿐만 아니라 구매 조건(배분 대상경기, 중계 방식, 중계권의 범위 등)을 제시

방통위 시정명령의 취지는 짧은 협상기간과 공평한 협상진행을 고려하여 중계권의 “가격”과 “조건”을 동시에 협의하라는 의미인 바,

SBS의 동 행위는 시정명령 문언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더러 그로 인해 성실한 협상진행의 전제 조건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시정명령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SBS가 4.26일 제시한 조건은 그 이전 협상과정에서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으로 협상타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의 증빙으로 이를 인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정명령의 미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인 “시정명령상 개별 의무의 위반”과 “성실한 협상 의무의 준수”는 과징금 부과(안)에서 논증 편의상 분리하여 적시되었으나,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동 과징금 부과(안)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유를 종합 고려하여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가격을 하루 늦게 제시했다는 사유만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을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SBS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② 4.28일 대면협상 거부 관련 >

SBS는 4.28일 대면협상을 거부했다고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KBS는 4.28일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이 대면 협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SBS가 순차편성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요청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4.29일에 양사간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면협상을 요청한 KBS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자사의 정당성을 최대한 항변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므로

전화상으로 오고간 몇가지 발언만으로 KBS의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속단하여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실제 대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한 협상에 임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SBS가 중계권 판매를 거부·지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행위들, 그간의 협상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본 건 과징금 부과(안)에서는 4.28일 대면협상 거부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거부·지연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지, 동 사실 관계만으로 이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동 사유만으로 시정명령 위반을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SBS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③ 4.30일 늦은 시간의 수정대안 제시 관련 >

SBS는 4.29일 KBS, MBC가 제안한 조건과 4.30일 오전 KBS가 제안한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SBS의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4.30일 18:30분경에야 수정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방송 3사간에 수차례의 대면협상, 공문 또는 유선 접촉에도 불구하고 순차편성 여부, 희망가격 등에 있어 현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단순히 자사가 4.30일 수정대안을 제시한 것만 놓고 협상 지연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30일 늦은 시간(18:30)에 수정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협상 거부역사의 정황으로 본 이유는,

- i) SBS의 최초제안 후 공식적인 수정제안은 동 제안이 유일하였던 점,
- ii) MBC가 당일 18:20분경 제시한 재방송권 배분을 포함한 3차 제안에 대해 실질적 검토가 없었던 점,
- iii) 3사가 4.30일 상호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방통위 보고기한인 5.3일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KBS의 5.1,2일 2차례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수정대안이 늦게 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시정명령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SBS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④ 5.1~3일 협상제안에 대한 거부 관련 >

SBS는 KBS의 5.1~3일 기간의 협상제안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 KBS의 5.1,2일자 제안은 협상태도와 제시안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 미 타결의 책임을 SBS에게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밖에 없고,

KBS의 5.3일자 협상요구 공문은 오후 2시 30분경에 접수되었으며, 이미 방통위의 협상결과 보고시한에 맞춰 자료작성을 거의 완료한 상황으로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5.1~3일 KBS의 제안을 거부한 사실을 SBS가 성실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정명령상 협상종료일은 4.30일이지만 3사 모두 그 날 수정 제안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상 의지가 있었다면 SBS가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 방통위 보고 전인 5.3일까지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힐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1~3일 대면협상을 거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SBS가 성실한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정황중 하나로서 다른 사실들과 함께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⑤ 한국전, 북한전, 개막·결승전의 단독중계 제안 관련 >

SBS는 한국전, 북한전 및 개막전·결승전을 단독중계하겠다고 제안한 이유는

2010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중계권 배분 배제에 따른 SBS의 피해보상, 한국전과 북한전 등 특히 관심이 높은 경기는 현장 중계방송이 가능한 사업자가 중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지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외면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BS와 MBC가 SBS에 대해 2010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중계권 배분을 거부한 행위는 4.23일자 시정명령에서 양사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구매를 부당하게 거부·지연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거로 이미 고려한 바 있고, 본 건 판단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정명령에 명시된 협상시한인 4.30일은 현장중계 및 광고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방송 3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남아공 현지 방송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4.26~30일 협상 기간에는 이미 자사만이 현장 중계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SBS가 현장 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한국전 등의 재방송권 배분까지 거부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SBS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⑥ 제시한 가격의 합리성 관련 >

SBS는 회계법인을 통해 월드컵 중계권 가치를 평가 받았으나, KBS·MBC는 가치 상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4년 전의 계약금액만을 고집하며, 중계권 가치가 높아진 시점에서 불합리한 가격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게 중계권을 구매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BS와 MBC는 3.17일 방통위의 자율협상 권고 이후 중계권 재판매 범위(모든 권리→지상파 관련 권리), SBS 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수료(부정→3% 인정하여 3사 균등부담)에 대해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금액과 관련되어 입장 변화를 보여 왔으므로 4년 전의 계약금액만을 고집하였다는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⑦ 금지행위 위반여부의 판단 방식 관련 >

SBS는 일부 기간만 한정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SBS는 중계권 취득 후 4년 동안 자율적으로, 법령 마련 이후에는 법령에 맞게 일관되게 협상을 제안해왔지만 KBS·MBC는 이를 철저히 무시

하였고, 한국의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난 이후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중계권 판매를 요구하였으며,

현장중계를 위한 시설배정 등 실무적인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의 보여주기 협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SBS를 포함한 방송 3사 모두 전체 협상기간 중 기간에 따라 협상에 임한 태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협상을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4.23일자 시정명령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고,

금번 과징금 부과(안)은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4.23일 이후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를 명함과 동시에 4.26~30일 기간동안 방통위의 시정명령 취지에 걸맞는 성실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한 이상 4.26일 이후의 협상 경과를 기초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일부 기간만을 한정하여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S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KBS와 MBC는 3.17일 방통위의 자율협상 권고 이후 중계권 재판매 범위(모든 권리→지상파 관련 권리), SBS 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수료(부정→3% 인정하여 3사 균등부담)에 대해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입장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없이 중계권 구매만을 요구하였다는 SBS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 ⑧ 재판매 승인권자인 FIFA의 입장 관련 >

SBS는 재판매 승인권자인 FIFA가 한국에서의 추가적인 지상파 중계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4.5일)하였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어떠한 재판매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해온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IFA가 SBS 인터내셔널에 보낸 서한(5.10일)에는 “뉴스보도를 제외하고는 재판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지상파에 한하여 재판매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한편, (i) SBS와 FIFA간의 중계권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특수관계, (ii) 4.5일자 기자회견시 SBS측의 질문에 대해 FIFA 관계자가 이러한 취지로 답변을 한 점,

(iii) FIFA가 SBS 인터내셔널에 보낸 서한에서 “어떠한 재판매”(any sub-licences)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인터넷·DMB·IPTV 등에 대한 재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FIFA는 E-Mail로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 재판매에 대한 승인이 별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어려운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SBS 주장의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 ⑨ 독점중계에 대한 평가 관련 >

SBS는 2010년 올림픽 및 월드컵이 독점 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중계됐고 시청자의 채널선택권도 보장됐음이 객관적으로도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4년 동안 성실히 협상을 해온 당사에 대해 단지 공동 중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23일자 시정명령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규정된 금지행위 모두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의 취지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SBS의 주장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계가 이루어지고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시정명령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4.23일자 시정명령 및 본 건 과징금 부과(안)은 실제 재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닌 협상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한 성실한 협상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성실한 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으로 중계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금지행위 위반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SBS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과징금 부과

가. 상한 및 기준 과징금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동 법 시행령 제60조의6 및 별표 2의2에 의거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기준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및 과징금 상한액 >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	과징금 상한액	기준 과징금
7,000만달러(약 789.7억원*)	350만달러(39.4억원)	350만달러(39.4억원)

* SBS가 FIFA에 중계권료를 분납하였으므로 개별 납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후 합산

나. 과징금 결정

보편적 시청권 제도 신설이후 최초 위반사례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 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SBS는 위 부과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2.29일 시행)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SBS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6조의3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 및 별표 2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0. 7. 2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이 경 자 (인)
	위 원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
	위 원	양 문 석 (인)